

청장(감사담당관 참조)에게 보고

- 중소기업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

3.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감사담당관
(전화 : 042-481-4339, Fax : 042-472-3266)

별첨 1. 중소기업청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 1부

2. 중소기업청공무원 행동강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중소기업청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청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고관계로 인한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5호, 2014.6.30.)을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9조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 확대(안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제8호 신설)

-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우
- 학연, 지연, 종료,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나. 행동강령의 제정·개정 통보(안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제8호 신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로 중소기업청 소속의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직유관단체”이라 한다)은 행동강령을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